

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32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5 . 29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 중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 승계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

개정근거

-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
- 『조례·규칙·규정』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

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권리의무의 승계)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</p>	<p>제22조(권리의무의 승계)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제〉</p>